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. 9. 17 선고 2020가단137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
말소등기절차이행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9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9. 11. 8. 접수 제511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허민

별지